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3월 22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3월 22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박은실)

가. 제안이유
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2022. 7. 11. 개정, 2023. 4. 1.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)
- 민원실의 설치 등(안 제4조)
- 민원실의 휴무 및 연장 운영(안 제5조부터 제6조)
- 민원상담관의 위촉 등(안 제7조)

-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·운영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2022. 7. 11 개정, 2023. 4.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2023. 3. 10.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